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규정

- 제1조 (명칭) 이 센터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설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(이하 "본 센터"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2조 (위치) 본 센터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.
- 제3조 (목적) 본 센터는 대학과 대학 내 부설연구소의 우수한 연구 인력과 기술개발 경험, 연구시설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 하는 등 대학과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산학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- 제4조 (사업) 본 센터는 제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2016.08.01. 개정>
 - ① 중소기업 현장기술 애로지도, 상담사업
 - ② 중소기업 신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분석
 - ③ 중소기업 기술정보, 기술교육 지원 사업
 - ④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관련된 사업
- 제5조 (소장) <2016.08.01. 개정>
 - ① 본 센터의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.
 - ② 본 센터의 소장은 중소기업 시행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.
- 제6조 (운영위원회 기능<mark>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</mark>한다. <2016.08.01. 개정>
 - ① 사업계획 및 예산 · 결산
 - ②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 - ③ 그 밖에 소장이 위임한 사항
- 제7조 (운영위원회 구성) <2016.08.01. 개정>
 -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고,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
- 제8조 (운영위원회 회의)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.
 -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 -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제9조 (수입) 본 센터의 수입은 정부지원금(중소기업청), 지자체지원금(서울·경기 중소기업청), 참여기업부담금, 대학지원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 <2016.08.01. 개정>
- 제10조 (지출) 본 센터의 지출은 중소기업산학협력 운영 요령과 본교 산학협력단규정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야 한다. <2016.08.01. 개정>
- 제11조 (보칙) 본 센터의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- 제12조 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준용한다. <2016.08.01. 개정>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